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북부건설사업소 종합감사 -

2021. 12.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권고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2	3	0	0	0	2	24,062	0	0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운영 부적정		1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관사 운영 관리 부적정		1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간 도로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1			1	21,093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위험도로개량 공사 추진 부적정		1			1	2,969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북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압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의 용도에 맞게 부서의 일부 직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1. 3.부터 2021. 12. 2.까지 아래 [표]와 같이 ‘직원 업무연찬 및 격려’ 등의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5,170천 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전체 직원이 아닌 부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연도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연도별	적 요	횟 수	집행금액	비 고
계		43회	5,170,000원	
2019년	직원 업무 연찬 및 격려	9회	816,000원	
2020년	직원 업무 연찬 및 격려	2회	221,000원	
2021년	직원 업무 연찬 및 격려	32회	4,133,000원	

※ 상세 집행내역은 별첨자료 참조

### 조치할 사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북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보증금, 일시 보관금 등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 및 제76조,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에서 출납원에게 송부된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일시 보관금 등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금고에서 출납원에게 송부된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수납등록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7.부터 2021. 11. 25.까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 본인부담금 및 사용자 부담금, 입찰보증금 등의 일시보관금이 입금되었는데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납입통지서에 따라 수납등록 하지 않고 반환하는 시점에 일괄해서 등록·승인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21. 11. 25. 기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의 잔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잔액현황

기준일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잔액현황(A)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잔액현황(B)	차액(A-B)	비고
2021. 11. 25.	36,201,220원	62,244,260원	26,043,040원	

### 조치할 사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관사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북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북부건설사업소는 「경상북도 북부청사 직원숙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관사 관리 주관부서로서, 경상북도 북부청사 관사(24실)의 사용신청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상·하수도 요금 지원 부적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관사는 1급 관사(도지사 관사), 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로 구분하며, 3급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북부청사 관사는 3급 관사로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3급 관사를 운영하면서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2018. 6월 ~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청사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북부청사 공공운영비(상·하수도요금) 납부 현황

부과년도	사용량(㎡)	납부금액(천원)			비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합계	
소계	16,601	36,856	15,376	52,232	
2018년	2,416	4,928	1,778	6,706	6~12월
2019년	5,315	11,711	4,810	16,521	
2020년	5,234	11,412	4,861	16,273	
2021년	3,636	8,805	3,927	12,732	1~11월

※ 위 표는 관사가 포함 된 북부청사 전체 상·하수도 요금임.

### 2. 관사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경상북도 북부청사 직원숙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 운영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 감사 1인)를 두도록 되어있고, 인사이동 등 해촉 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북부건설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선발하여 7일 이내에 주관부서(북부건설사업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직원 숙소 운영 개정사항, 관사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관사 배정 및 환경정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관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관사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 등 관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명단 현행화 및 회의 개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3. 11. 27. 회의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미정비 등 관사 운영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사 사용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관사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현행화 등 관사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 ~ □□간 도로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북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 ~ □□간 도로건설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간 도로건설공사	도로 확포장 L=3.85km,B=8.5m	8,170	6,237	1,933	2020.6.2.	2020.6.9~ 2024.7.11.		공정률 10%

### 1.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 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 ~ □□간 도로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품질시험 계획서에 시험장비, 시험실 배치도, 시험 계획 물량, 품질관리인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누락되는 등 품질시험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도 없었고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불필요한 교명주 반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2.2.4(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된 교명주는 차도 쪽으로 돌출된 구조로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교량에 접근하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더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가 큰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량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 ~ □□간 도로건설공사의 □□교 및 □□교 가설과 관련하여 교량 충돌에 따른 사고 피해가 큰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교명주 설치 공사비 21,093천원(제경비 포함)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 ① 부실하게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후 승인하시기 바라며,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093천원(제경비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 위험도로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북부건설사업소  
 관 계 부 서 □□□□□□  
 내 용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 위험도로개량공사」를 아래 [표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1] 사업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위험도로개량공사	위험도로 개량 L=460m	1,872	1,721	151	2018. 12.26.	2018.12.26 ~ 2024.1.1.		공정률 40%

### 1.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5에 “30억원 미만 공사의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 위험도로 개량공사(2차) 토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 배치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통보서를 제출<sup>1)</sup>받고 건설기술인 배치기준[표2]에 맞지 않은 현장대리인을 적정으로 검토·승인(2021.8.6.)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2]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30억미만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경력사항	적합여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04일	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초급 기술인	부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04일	부

### 2.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 □□□□□□에서는 □□□□□□ □□□□□□ 위험도로 개량공사 추진하면서 2021.5.26. 설계 변경시에 반영된 L형 옹벽식 측구 설치(H=1.2m, L=480m) 공정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레미콘타설에 대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인력을 적용하였고, 철근가공및조립은 국도설계기준에 따라 간단한 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간단 100%를 적용하여 2,969천원(계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1) 토공사 : 에스씨건설(주), 435,770천원

**조치할 사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 ①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맞는 하도급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라며,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969천원(제경비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